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8. 4. 14.

제안자 : 복지도시위원장

1. 수정이유

서울특별시마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기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가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결
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(안 제7조제7항)
- 나. 제목의 “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)” 를 “(기금운용계획 및
결산)” 으로 함(안 제14조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 중 “①기금” 을 “기금” 으로 한다.

안 제4조 중 “①기금” 을 “기금” 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” 을 삭제한다.

안 제5조제2항 중 “구청장” 을 “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

안 제7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궐위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안 제8조 중 “①위원회” 를 “위원회” 로 한다.

안 제14조의 제목 “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)” 를 “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” 으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수 정 안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 1. ~ 2. (생략)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 1. ~ 2.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 으로 하되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 다.)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 ----- (삭제)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생략)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 관리하여야 하며,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(원안과 같음) ②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.)----- -----</p>
<p>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~⑥ (생략) (신설)</p>	<p>제7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~⑥ (원안과 같음)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결위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제14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) ① ~ ② (생략)</p>	<p>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4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~ ② (원안과 같음)</p>